

학회상 수상 규정

제정 : 1997년 9월 26일
개정 : 2008년 1월 24일
개정 : 2012년 5월 25일

제 1 장 상 설정의 목적

제 1 조 한국소음진동공학회상(이하 “상”이라고 한다)은 소음 및 진동공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개발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상의 종류

제 2 조 상은 다음의 3 종류로 한다.

- 가. 공로상 약간명
- 나. 학술상 약간명
- 다. 기술상 약간명

제 3 장 수상 자격

제 3 조 수상자는 다음의 각항 별로 전문적 심사에 의하여 그 업적이 해당부문에서 탁월하여 우리나라 소음 및 진동공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.
단, 업적이 완성된 후, 3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.

- 가. 공로상 수상자격
우리 학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회원.
- 나. 학술상 수상자격
소음 및 진동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탁월한 학술적 업적을 이룩한 분으로서, 우리학회 논문게재 실적, 학술대회 및 학술위원회 행사 참여도, 논문심사 참여도 등에서 뛰어난 적극성을 보인 회원.
- 다. 기술상 수상자격
소음 및 진동 분야 산업에서 독창성이나 실용성이 뛰어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최소 3년 이상 학회행사(학술대회 논문발표 및 부스전시, 학술위원회 세미나 및 강습회 강연 등)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(사).

제 4 장 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발굴

제 4 조 수상후보자는 제 6조의 추천을 받은 자, 또는 제 7조의 “한국소음진동공학회상 수상위원회”에서 발굴한 자로 한다.

제 5 조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매년 이사회가 정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.

- 가. 추천이유서 2통
- 나. 피 추천자의 이력서 2통

다. 피 추천자의 사진 (명함판) 2매

라. 피 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(논문, 저서는 3부 제출하여야 한다.

또한 제품은 원형제시에 앞서 이에 관한 자료로 대치할 수 있다).

제 6 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.

가. 학술상

- ① 우리 학회 정회원 5명 이상
- ② 대학교의 총장, 대학원장 및 학장
- ③ 학술단체 및 연구소의 장

나. 기술상

- ① 우리 학회 정회원 5명 이상
- ② 학술단체 및 연구소의 장
- ③ 사업체 및 현업관공서의 장
- ④ 기술계 학교의 장

다. 공로상

- ① 임원 또는 제위원회의 위원장

제 5 장 수상자 선정

제 7 조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「한국소음진동공학회상 수상위원회」를 구성하며, 심사위원은 매년 한국소음진동공학회장이 동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촉한다.

제 8 조 한국소음진동공학회상 수상위원회는 상별로 수상 예정자를 선정한 후, 한국소음진동공학회장에 이를 추천한다.

제 9 조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수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 예정자는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 된다.

제 10 조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수상위원회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6 장 시 상

제 11 조 상의 시상은 매년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.

제 12 조 상의 수여에 있어서는 상패 및 부상으로 한다.

제 13 조 수상자가 수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을 취소한다.

부 칙

- 1. 수상자 선정에 관한 토론,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.
- 2. 수상자 선정에 대한 여하한 항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.
- 3. 본 규정은 199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학회상 수상위원회 규칙

제정 : 1997년 9월 26일

개정 : 2012년 5월 25일

- 제 1 조** 본 규칙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수상 규정(이하 상 규정이라 한다) 제 7조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상 수상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**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이를 한국소음진동공학회장이 매년 위촉한다.
- 제 3 조** 위원장은 수상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4 조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5 조**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상 규정 제 2조에 의한 상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전문위원은 수상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소음진동공학회장이 위촉한다.
- 제 6 조** 심사는 추천시에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고, 필요할 때에는 보충자료의 제출 및 상 대상사실의 확인을 수상후보자 또는 그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제 7 조**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 8 조** 수상 예정자의 결정은 재적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제 9 조**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중요결의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한다.
- 제 10 조** 위원회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상 심사업무 이외에 상 제정 및 포상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다.
- 제 11 조**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